

##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8. 9. 11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8. 9. 11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6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98. 9. 16) 상정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실장 장상진)

가. 제안이유

- IMF체제하의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전반에 외부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창의적 견해를 받아들이고, 관내 중소기업에게 외자 및 기술유치를 지원하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문위원회, 외자·기술유치단, 해외세일즈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

나. 주요골자

- 경제자문위원회, 외자·기술유치단, 해외세일즈단, 무역상담실의 구성운영
- 각 지원기구의 주요기능

#### 1. 경제자문위원회

- 시의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
- 관내기업의 해외 수출활동 지원에 관한 자문
- 해외자본의 관내유치 및 기업간 흡수·합병추진에 관한 자문
- 관내 기업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자문
- 실업자대책 등 민·관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
- 노·사·정 협력에 관한 자문

#### 2. 외자·기술유치단

- 외자 및 기술유치 활동
- 국내·외 기업간 흡수·합병 추진활동
- 국내·외 투자유치 정보수집 관리
-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지원

#### 3. 해외세일즈단

- 관내기업 생산품의 국내·외 판매지원
- 해외시장 개척 및 바이어 발굴지원 등 기타

4. 무역상담실

- 외국 바이어와의 수출·입 상담 및 통역지원
-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, 국내·외 시장진출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관한 정보제공
- 기업간 정보교환 및 아이디어 창출기회 제공
- 관내 중소기업의 무역에 관한 상담

○ 기금의 설치운영

- 외자·기술유치단 및 해외세일즈단의 활동에 따른 수당지급을 위한 기금설치
- 기금은 외자·기술유치 및 해외세일즈 활동결과의 수혜기업으로부터 업계의 관행보다 낮은 2 퍼센트 이내의 수수료로 조성

○ 경비지원

- 각 민간지원기구 구성원의 국내·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보상
- 상근 무역상담위원과 보조원의 경우 일액 등을 지급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안 제17조 경비 등의 지원은 범규상 하자가 없습니까?	○ 네, 없습니다.
○ 안 제17조의 자원봉사자는 상시근무합니까?	○ 외국 바이어와의 상담시 등 필요시에만 근무합니다.
○ 해외세일즈, 기술유치 등의 성과에 따른 수수료는 몇 퍼센트이며, 일반 대행업자의 수수료는 몇 퍼센트입니까?	○ 우리의 수수료는 2%이며, 대행업자는 5-7%입니다.
○ 안 제3조제4항에 명예자문위원은 지원자가 있습니까?	○ 네,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위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.
○ 외자유치단, 해외세일즈단의 상근 인원은?	○ 2명 정도의 상근인원을 고려중입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

의안번호	제21호
의결년월일	98. 9. 22 (제64회)

제출년월일 : 1998. 9. 11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IMF체제하의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전반에 외 부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창의적 견해를 받아들이고, 관내 중소기업에게 외자 및 기술유치를 지원 하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문위원회, 외자·기술유치단, 해외세일즈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

□ 주요골자

○ 경제자문위원회, 외자·기술유치단, 해외세일즈단, 무역상담실의 구성운영

○ 각 지원기구의 주요기능

1. 경제자문위원회

- 시의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
- 관내 기업의 해외수출활동 지원에 관한 자문
- 해외자본의 관내유치 및 기업간 흡수·합병추진에 관한 자문
- 실업자대책 등 민·관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
- 노·사·정 협력에 관한 자문
- 기타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자문

2. 외자·기술유치단

- 외자 및 기술유치 활동
- 국내·외 기업간 흡수·합병 추진활동
- 국내·외 투자유치 정보수집 관리
-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지원
- 기타 외자·기술유치와 관련있는 사항의 지원

3. 해외세일즈단

- 판매기업 생산품의 국내·외 판매지원
- 해외시장 개척 및 바이어 발굴지원
- 기타 해외무역과 관련한 제반활동의 지원

4. 무역상담실

- 외국바이어와의 수출·입 상담 및 통역지원
-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, 국내·외 시장진출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관한 정보제공
- 기업간 정보교환 및 아이디어 창출기회 제공
- 판매 중소기업의 무역에 관한 상담
- 기타 무역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

○ 기금의 설치운영

- 외자·기술유치단 및 해외세일즈단의 활동에 따른 수당지급을 위한 기금설치
- 기금은 외자·기술유치 및 해외세일즈 활동결과의 수혜기업으로부터 업계의 관행보다 낮은 2퍼센트 이내의 수수료로 조성

○ 경비지원

- 각 민간지원기구 구성원의 국내·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보상
- 상근 무역상담위원과 보조원의 경우 일액 등을 지급

제정조례(안) : 별첨

관계법령발체서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(자문기관의 설치)

-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·건의·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

관련사업계획서

예산수반사항 : 사업추진 소요경비 예산반영

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##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기구인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와 외자·기술유치단, 해외세일즈단의 민간지원기구(이하 "민간지원기구"라 한다)및 기금, 무역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장 경제자문위원회

제2조(기능)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시의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
2. 관내 기업의 해외 수출활동 지원에 관한 자문
3. 해외자본의 관내유치 및 기업간 흡수·합병 추진에 관한 자문
4. 관내 기업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자문
5. 실업자대책 등 민·관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
6. 노사정 협력에 관한 자문
7. 기타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자문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기업경영 컨설턴트, 회계사, 변호사, 기업인 등 경제와 관련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위원회는 관내 기관·단체장 또는 위원회의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인사들 중에서 약간명의 명예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회) ①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의견청취등)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관계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 요청
2.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
3.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인, 참고인, 전문가 등의 의견개진 요청

제7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2.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3.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기타 위촉원인이 소멸된 때

제8조(간사)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.

제9조(실비변상)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3장 민간지원기구

#### 제1절 외자·기술유치단

제10조(기능) 외자·기술유치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외자 및 기술유치 활동
2. 국내·외 기업간 흡수·합병 추진활동
3. 국내·외 투자유치 정보수집 관리
4. 사회간접 자본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유치 지원
5. 기타 외자·기술유치와 관련있는 사항의 지원

제11조(구성) 외자·기술유치단은 10인 이내의 외자·기술유치와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 시장이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국인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다.

#### 제2절 해외세일즈단

제12조(기능) 해외세일즈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관내기업 생산품의 국내·외 판매지원
2. 판매활동과 관련한 해외정보수집 및 정보제공
3. 해외시장 개척 및 바이어 발굴 지원

4. 기타 해외무역과 관련한 제반활동의 지원

제13조(구성) 해외세일즈단은 10인 이내의 무역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 시장이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국인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다.

제3절 운영

제14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민간지원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업무협력) 대규모 투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, 외자·기술유치, 해외세일즈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관련전문가 또는 법인·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16조(운영) 민간지원기구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·제6조·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7조(경비 등의 지원) ①민간지원기구의 구성원은 자원봉사자로 하되 국내·외 여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액 등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민간지원기구의 운영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장 기금의 설치

제18조(기금의 조성)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지원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조성한다.

- 1. 외자·기술 유치활동에 따른 수수료
- 2. 해외 세일즈 활동에 따른 수수료
- 3. 기타 기금의 운영 등에 의한 잠수입

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당해 기업으로부터 징수한다.

제19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.

- 1. 외자·기술유치단의 성과에 대한 수당
- 2. 해외 세일즈단원의 성과에 대한 수당
- 3. 민간지원기구의 활동과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

제20조(기금의 운용)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

제21조(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)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되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.

제22조(기금관리공무원)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이, 기금출납원은 담당과장이 된다.

제23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### 제5장 무역상담실

제24조(기능) 무역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외국바이어와의 수출입상담 및 통역지원
2.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, 국내의 시장진출 및 해외 시장개척 등에 관한 정보제공
3. 기업간 정보교환 및 아이디어 창출기회 제공
4. 관내 중소기업의 무역에 관한 상담
5. 기타 무역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

제25조(상담위원등) ①무역상담실에는 무역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3인 이내의 상담위원과 1명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상담위원은 상담내용을 상담일지 등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26조(운영) ①무역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, 제6조,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시장은 무역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7조(일액 등의 지급) 상담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8조(복무) 상담위원 및 보조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.

제29조(자원봉사요원) 무역상담실 운영을 원활히하고 상담을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6장 보 칙

제30조(민·관협의체 운영) 시와 민간지원기구와의 긴밀한 업무협력 및 단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·관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3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